

『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
- 과대·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

3. 주요내용

- 10개 통·리 증설 (안 별표2, 별표25, 별표26, 별표27)
 - 통·리 : 595개 통리(통 427, 리 168)
 - ⇒ 605개 통리(통 434, 리 171)
- 88개반 증설, 1개반 폐지(안 별표2, 별표9, 별표15, 별표25, 별표26, 별표27)
 - 반 : 4,269개 반 ⇒ 4,356개 반(87개 반 증설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 - 택지개발과 아파트신축 등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과대·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 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통리는 595개 통리에서 고아읍 3개리, 인동동 2개통, 진미동 2개통, 양포동 3개통 등 10개통리의 증설로 605개 통리로 조정하였고
- 반은 4,269개반에서 고아읍 중 10개, 송정동 중 1개, 형곡1동 중 2개, 인동동 중 26개, 진미동 중 13개, 양포동 중 36개 등 88개반을 증설하면서, 인동동 1개반을 감하여 총 87반이 증가된 4,356개 반으로 조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아파트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생활권과 일정기준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통리반이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조정되었는지의 검토가 요구됨